

대통령령 제 호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7(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) 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“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·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의7(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) <u><신 설></u>	제27조의7(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) <u>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“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·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.</u> <u>< 부 칙 ></u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895